##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4500 제출연월일: 2024. 10. 2.

제 출 자:정 부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인 "금원(金員)"을 "금품"으로 순화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3항 중 "금원(金員)"을 "금품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세제 지원 등) ①・② (생	제14조(세제 지원 등) ①・② (현
략)	행과 같음)
③ 정부는 협회의 설립・운영을	3
위하여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재	
산 또는 <u>금원(金員)</u> 의 경우에는	
「소득세법」 또는 「법인세	
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	
전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(損	
金)에 산입(算入)할 수 있다.	